

2024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및 업무취급승인심사 결과 공개

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취업심사 등의 결과 및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도 공개

□ 공개근거 :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6

□ 공개대상 : 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

□ 취업심사 결과

퇴직당시			취업(예정)		심사결과	결정사유
소속	직급	퇴직시기	기관 (직위)	시기		
경상북도 경산시	지방서기관	2024. 6월	대구의대학교 (동의한방촌 대외협력국장)	2024. 7월	취업승인	「공직자윤리법」 시행령 제34조제3항제9호 인정

※ 상기내용은 취업심사 결과이며, 실제 취업여부와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.

【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】

구 분	주 요 내 용
취업제한	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·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
취업불승인	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*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*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, 경영개선, 임용 전 종사 분야,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
취업가능	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·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
취업승인	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(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제34조제3항각호)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

□ 업무취급승인심사 결과

퇴직당시			취업(예정)		심사결과	결정사유
소속	직급	퇴직시기	기관 (직위)	시기		
경상북도 구미시	지방서기관	2024. 6월	구미전자정보기술원 (구미상생일자리 협력센터장)	2024. 7월	업무취급 승인	「공직자윤리법」 제18조의2제3항의 승인사유에 해당

※ 업무취급승인 :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음(법 제18조의2제3항)